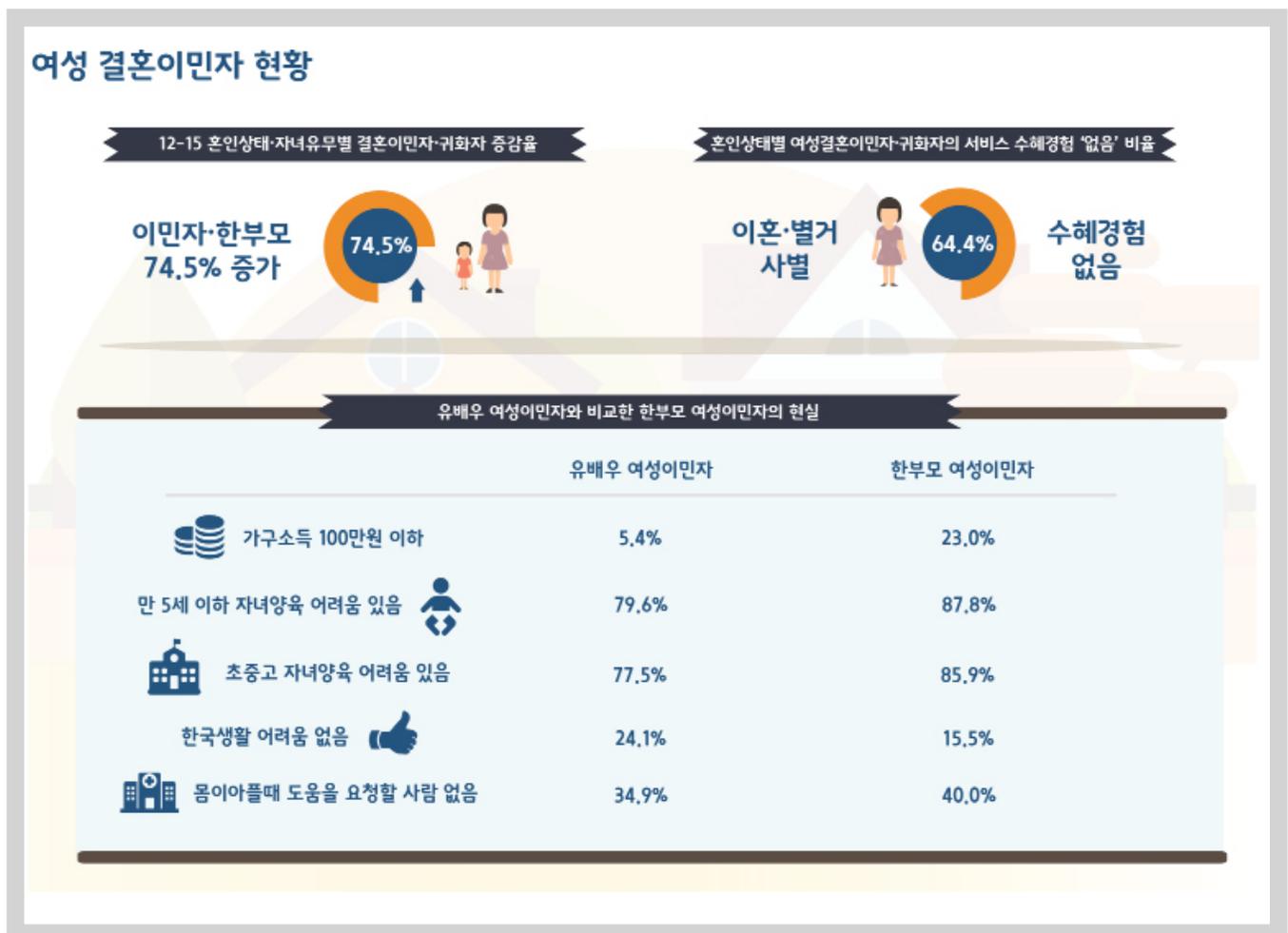


KWDI 이슈페이퍼

수행과제명 다문화가족의 구성 변화와 정책 대응 다각화 방안 과제책임자 김이선 연구위원 (Tel:02-3156-7158 / e-mail:yskim@kwidmail.re.kr)

이민자-한부모 가족의 증가에 따른 정책 방안*

“ 본 연구에서는 이민자-한부모가족 등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세부집단이 직면한 문제를 정책의제로 채택하고 이들의 정착과 사회통합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함. ”



- 2000년대 중반-2010년대 초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했던 시기에 결혼생활을 시작했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우자와 이혼 혹은 사별한 후 혼자 자녀를 키우는 이민자-한부모 가족이 늘고 있음.
- 이혼, 사별한 여성이민자는 사회적 소외나 경제적 빈곤, 자녀양육 문제 등이 심각한 수준이지만, 주변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각종 지원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음.
-부부 모두 있는 가족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는 이들의 상황에 맞지 않으며, 다문화가족 특별분양 등 일부 제도 역시 부부 모두 있는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민자-한부모들은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임.
- 국제결혼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앞으로 이민자-한부모 가족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, 이민자-한부모 가족의 정착과 자립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.

1. 배경 및 문제점

- 📍 이민자-한부모 가족의 증가와 국제결혼 부부를 기준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정책의 개편 필요성
 - ▶ 현행 법 상 다문화가족에는 국제결혼 부부 중심 가족 뿐 아니라 이혼, 사별 등으로 가족구조가 재구성된 가족도 포함되어 있음.
 - 다문화가족 정책은 2000년대 중반 국제결혼 부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에 초점을 두고 출발했으나, 이혼, 사별 등으로 가족구조가 재구성된 다문화가족 등 국제결혼 부부 중심 가족과는 구조와 성격이 다른 다문화가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.
 - ▶ 그러나, 이민자-한부모 가족은 국제결혼 부부 중심 가족에 비해 그 수가 적다는 이유로 정책,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음.
 - 이는 실제 정책이 법과 괴리된 채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, 정책의 책무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.
 - 더욱이, 그러한 집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의 효과성 면에서도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음.
 - ▶ 다문화가족 가운데에서도 이민자-한부모가족 등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세부집단이 가족생활, 경제생활, 사회생활 등에서 직면한 문제를 정책의제로 채택하고 이들의 정착과 사회 통합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구체화해야 할 것임.

2. 조사 및 분석결과

④ 이민자-한부모 가족의 증가

- ▶ 2012년에 비해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사별, 이혼·별거 상태에 있는 결혼 이민자·귀화자(이하 이민자)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 - 특히, 여성 이민자 중 사별 혹은 이혼·별거 상태에 있는 이들이 크게 증가

[표 1] 성별 혼인상태별 결혼이민자·귀화자 증감율

(단위: 명, %)

	2012-2105 규모 변화		2012-2015 증감율	
	남성	여성	남성	여성
미혼	-2,017	-1,268	-40.30	-29.16
배우자있음	427	11,767	0.86	5.71
사별	184	4,015	43.60	82.44
이혼·별거	641	7,544	34.22	69.36

자료: 「2012년,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」 원자료 분석.

- ▶ 사별 또는 이혼·별거 상태에 있는 유자녀 이민자, 즉 이민자-한부모 가족은 2012년에 비해 2015년 74.5% 증가
 - 같은 기간 중 사별 또는 이혼·별거 상태에 있는 무자녀 이민자는 72.7% 증가
- ▶ 2000년대 중반-2010년대 초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했던 시기에 결혼생활을 시작한 결혼 이민자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우자와 이혼 혹은 사별한 후 혼자 자녀를 키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.

④ 이민자-한부모 가족이 직면한 중층적 문제

- ▶ 배우자 있는 여성이민자에 비해 이혼, 사별한 여성이민자는 문화적 적응 수준은 높지만, 사회적 소외나 경제적 빈곤, 자녀양육 문제 등은 심각한 수준임.

[표 2] 유배우 여성이민자와 이혼·별거·사별_유자녀 여성이민자의 생활 실태

	유배우	이혼·별거·사별_유자녀
가구소득 100만원 이하	5.4%	23.0%
만 5세 이하 자녀양육 어려움 있음*	79.6%	87.8%
초중고 자녀양육 어려움 있음*	77.5%	85.9%
한국생활 어려움 '없음'	24.1%	15.5%
몸이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 '없음'	34.9%	4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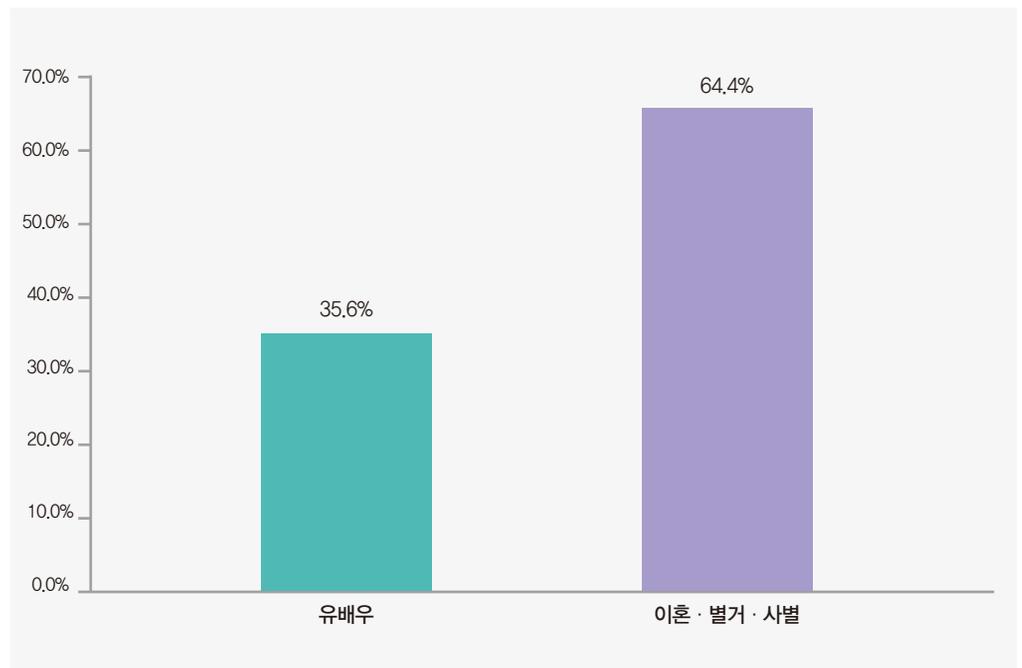
*'어려움 없음'이 아닌 경우

- ▶ 이민자-한부모들은 한부모로서, 이민자로서 이중, 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해있음.
 - 어느 한부모처럼 취업에서도, 자녀양육에서도 장애에 직면하기 쉽고 경제적 빈곤과 주거 문제도 심각한 수준임. 다중적인 장애요인 하에서 자립에 대한 의지도 갖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.
 - 더욱이, 생계와 가족생활 모두를 한국사회에서의 정착도 완결되지 않은 이들이 전담해야 하는 만큼, 일반적인 한부모보다 상황은 훨씬 복잡할 수 밖에 없음.
- ▶ 중층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도 주위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.
 - 외국인인 '친정부모'의 도움을 받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.
 - 이주 이후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사회적 관계망이 이혼, 사별로 더욱 축소되는 경향까지 있어 사회적 자원을 활용한 '자구책'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.

📍 관련 정책, 서비스에서 주변화/ 배제된 이민자-한부모 가족

- ▶ 이혼, 사별 상태에 있는 여성이민자들이 생활의 제반 측면에서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.

[그림 1] 혼인상태별 여성결혼이민자·귀화자의 서비스 수혜 경험 '없음' 비율



자료: 「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」 원자료 분석.

- ▶ 심지어 일부 제도에서는 이민자-한부모 가족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기도 함.
 - 일례로 '다문화가족 특별분양'에서는 '부부가 함께 사는 다문화가족'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민자-한부모 가족은 법제도적으로는 다문화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자격이 없음.
 - 더욱이, 이민자-한부모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국적자일 경우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임.
- *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자격, 국민임대주택 부양가족 기준 - 외국국적자 중 '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', 즉 배우자 있는 결혼이민자만을 인정

📍 정책+자립을 위한 이민자-한부모의 노력과 실현 가능성

- ▶ 이처럼 여러 문제가 중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함.
 - 이민자-한부모로서의 경험과 관심을 공유하는 이들 간에 모임이 결성되어 자신들이 직면해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있어 새로운 계기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음.
- ▶ 그러나 이민자인 동시에 한부모인 이들이 정착과 자립을 동시에 추구하고 가족생활 상에서 직면하는 각종 문제를 해나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, 서비스는 찾아보기 어려움.
 - 현재로서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다층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나,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로 노력을 시작했다가도 포기, 좌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.
 - 이민자-한부모가 중층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착과 자립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정책적, 사회적 지지가 필요함.

3. 정책제언

제언 1) 📍 이민자-한부모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

- ▶ 이민자-한부모 가족도 신청 가능하도록 다문화가족 특별분양제도 신청자격 개선
- ▶ 공공주택제도 정보 안내를 위한 기관 간 연계 체계 마련
 - 주거복지센터 설치 지역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주거복지센터 연계, 공공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
- ▶ 이민자-한부모들이 자립 준비 기간 동안 기거할 수 있는 다양한 성격의 공동주거시설 설치.
 - 폭력피해 이주여성 이외에 이민자-한부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시설 설치, 운영.
 -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MOU 체결,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정부 지원 이민자-한부모가족 공동주거시설 설치, 운영.
 - 공동주거 시설 운영 시 자녀양육, 교육 관련 지원도 함께 제공.
- ▶ 이민자-한부모 가족을 위한 사회적 주택 모델 개발.
 - 이주여성지원단체 활동가 대상 이민자-한부모 가족을 위한 사회적 주택 운영 교육 실시.

제언 2)  **국적 미취득 이민자-한부모의 체류 및 복지 관련 제도 개선**

- ▶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중 외국국적 한부모 가족을 배제하는 제도 발굴, 개선
 - 한국국적 자녀를 키우고 있는 외국국적자(외국국적 한부모)도 근로·자녀지원금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3(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) 개정
- ▶ 외국국적 한부모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도록 임대주택제도 개선
 -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인등록증(또는 국내거소신고증)을 근거로 외국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한국국적 자녀와 함께 사는 외국국적 부모에게도 적용
- ▶ 한국국적 미성년자의 외국국적 부모에게도 임대주택 신청 권한 부여 검토
 - 현재 정부의 계획대로 외국인 배우자와 직계혈족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도록 주민등록법 개정될 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더라도 임대주택 신청권 부여하는 방안 검토
- ▶ 한국국적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하면서 자녀를 양육한 외국국적 부모에게 간이 귀화, 영주권 자격 요건 중 경제적 자립 능력 요건 면제하는 등 특례조치 강구

제언 3)  **이민자-한부모 가족의 안정적 생활과 자립을 위한 적극적 지원**

- ▶ 다문화가족지원센터,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가족관계, 부모 역할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이민자-한부모 가족 서비스 기능 제고
- ▶ 현행 도 단위 거점센터에 이민자-한부모 가족 전문 상담인력 배치, 지역 센터 순회 상담 실시
- ▶ '이민자-한부모 정착+자립 지원 패키지(가칭)' 개발, 시행
 - 이민자-한부모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부모 역할, 취업 준비, 주거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 접근, 개개인의 가능성과 자원, 과제를 구체화하고 중장기적인 준비 계획 수립에 초점
 - 현행 정착지원 패키지의 하위 프로그램 시행
- ▶ 정착+자립을 목적으로 한 이민자-한부모 자조모임 지원사업 개발

제언 4)  **사각지대 이민자-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 확립**

- ▶ 경제적 빈곤, 자녀돌봄의 공백, 심리적 불안, 자녀의 언어지체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민자-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개발
 - 현재 일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업을 사각지대 이민자-한부모 발굴, 집중지원 사업으로 재설계

제언 5)  이민자-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업,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다각화

- ▶ 이민자-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업, 프로그램 시행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외에 이주여성지원단체, 이민자-한부모 모임 등의 핵심 축으로 설정
- ▶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지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민자-한부모 가족 발굴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, 동사무소, 복지관, 이주여성지원단체 간 연계 확립

주관부처: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, 가족지원과, 지자체 외국인·다문화가족
관련 부서: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, LH공사,
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, 외국인정책과

관계부처: 국무조정실 외국인·이민정책 TF